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. 4. 2 선고 2018가단217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(선정 당사자)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19. 3. 12

판결 선고 2019. 4. 2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별지1목록 기재 선정자에게 별지2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2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원고(선정당사자) 및 별지1목록 기재 선정자(이하 이들을 통틀어 '원고 등'이라한다)는 별지2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각 1/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.

○ 피고는 별지2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등에게 같은 목록 제1항기재건물을철거하고,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(선정당사자)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함철환

별지